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00

제출년월일 : 2001. 5. 5. 목

제출자 : 광양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92조(대부료율과대부재산의평가)규정에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산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조성한 산막 등 휴양객 이용시설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산촌종합개발계획에따라 설치한 산막등 휴양객 이용시설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
- 2000.12.31까지 적용기한이 경과된 조항(제22조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5. 관계부서의견**

- 관계부서 : 산림과
- 의견 : 산촌종합 개발계획에 의거 시행한 산막을 마을에 사용수익허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부료(사용료)를 부과토록 조례개정 요청

6. 예산사항

- 다압금천지구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산막의 경우
 - 현행조례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 $125,000\text{천 원} \times 50/1000 = 6,250\text{천 원}$
 - 개정조례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 $125,000\text{천 원} \times 10/1000 = 1,250\text{천 원}$
- ※ 차액분 : 5,000천원

7. 입법예고

- 기 간 : 2001. 3. 21. - 2001. 4. 9. 까지 (20일간)
- 방 법 : 시보 제15호 (2001. 3. 21) 및 옴연동계시판 공고
- 예고결과 : 의견없음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한 산막 등 휴양객 이용시설물의 대부분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 (생 략) 1 ~ 3 (생 략)</p> <p><u>4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 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u></p> <p>5 ~ 6 (생 략)</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 ⑧ (생 략)</p> <p><u><신 설></u></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p><u>4 <삭 제></u></p> <p>4 ~ 5 (현행 제5호, 제6호와 같음)</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 ⑧ (현행과 같음)</p> <p><u>⑨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한 산막 등 휴양객 이용시설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 (생 략)</p> <p>② <u>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p> <p><u>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제29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관계조문

관련조항	조문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시행령 <input type="radio"/> 제92조제1항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평가)	<p>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10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수 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p>